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30 선고 2018나41305(본소), 2018나41312(반소) 판결 [매매대금 ,
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30 선고 2018나41305(본소), 2018나41312(반소)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7 선고 2017가단108118, 2017가단108811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오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B

변론 종결 2019. 4. 18

판결선 고 2019. 5. 30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7. 선고 2017가단108118(본소), 2017
가단10881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8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1,720,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.경부터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8. 30.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

(1)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(2)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, 제1심 판결 이유 7면 9행 ~ 11행의 '2017. 8. 29. 해제되어 - 마땅하다. '부분을 '그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어 2017. 8. 29.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,'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,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이성호 판사 최한돈